

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가입신청서 및 공익신탁 계약서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 : 2026. 08. 10.

2. 개정 내용

현행	개정(안)	비고
「공익신탁 가입신청서」 1. <생략> 2. 공익사업 지정 :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 등 학교 생활 지원 사업 3 ~ 5. <생략> 6.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위탁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, 보관의무 등을 위해 수탁자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위탁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<이하 생략> 「공익신탁 계약서」 제1조 ~ 제24조 <생략>	「공익신탁 가입신청서」 1. <좌동> 2. 공익사업 지정 : <u>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 보장, 학교생활유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사업</u> 3 ~ 5. <좌동> 6.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위탁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, 보관의무 등을 위해 수탁자가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위탁자는 <u>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, 부동의에 따라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u> <이하 좌동> 「공익신탁 계약서」 제1조 ~ 제24조 <좌동>	- 법무부 변경인가내용 반영 - 기존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와 문구 통일